

이사회 운영 규정

애경산업주식회사

제정 : 2016년 12월 02일

제1차개정: 2020년 02월 27일

제2차개정: 2021년 02월 04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단,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지정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이상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,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 및 제415조의2(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)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 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(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)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

- (13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 - (14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 - (15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 - (16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 - (17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- (18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(19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- (20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3. 재무에 관한 사항 (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,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)
- (1) 건당 자기자본 5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, 공장신설 등 투자에 관한 사항
 - (2) 건당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중요한 계약의 체결
 - (3) 건당 자산총액 2.5%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(유·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포함하나, 단순 자금운용 등을 위한 금융자산 등의 취득은 제외함)
 - (4) 건당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차입금의 증가 (회사의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, 기존차입금의 연장이나 대환 [동일 금융기관 내 차입과목 변경 또는 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한 상환을 포함함]은 차입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제외함)
 - (5) 건당 자기자본 2.5% 이상의 채무 인수 또는 면제
 - (6) 건당 자기자본 2.5% 이상의 담보제공(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) 또는 채무보증(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)
 - (7) 건당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
 - (8) 결손의 처분
 - (9) 신주의 발행
 - (10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위임
 - (11)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(12)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(13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- (14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- (15) 자기주식의 소각
 - (16) 기타 재무적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5% 이상의 사항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5. 기타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 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(4) 기타 비재무적 사항으로서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
 - (5) 본 항에도 불구하고,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 - 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 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③ 상법, 정관 및 본 조에서 이사회 의결의 부의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체에 관하여는 대표 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한다.

제11조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지원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 (2016.12.02.)

본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2020.02.27.)

본 규정은 2020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02.04.)

본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